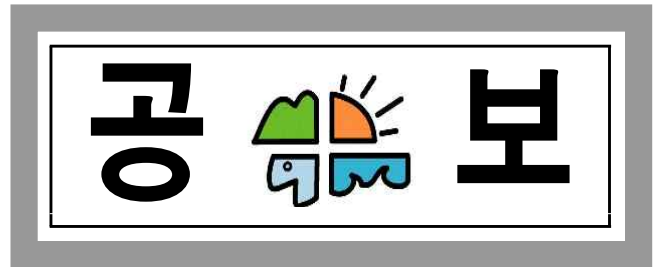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제1180호 2018년 12월 3일(월)

공 고

- 속초 도시계획시설(영랑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공람·공고 2
-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3

속초 도시계획시설(영랑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을 위한 공람·공고

속초시고시 제2015-43호(2015.09.25.)로 최초 결정된 영랑근린공원 공원조성 계획에 대하여 공원조성계획을 변경결정 하고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람·공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8. 12. 3.

속 초 시 장

1. 공고목적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등에 관한 특례)에 따른 속초 도시관리계획(영랑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안) 공람·공고
2. 공고내용
 - 가. 위 치 : 속초시 금호동 산278번지 일원
 - 나. 면 적 : 당초 145,591m²
변경 144,700m² (감 891m²) (공원시설 : 101,290m², 비공원시설 : 43,410m²)
 - 다. 변경내용 : 공람장소 비치도서와 같음
3. 공람기간 : 공고일(신문게재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4. 공람장소 : 속초시청 공원녹지과(☎ 033-639-2196)
5. 관계도서 : 생략(기타 자세한 사항은 열람장소에 비치한 도서 참조)
6. 의견제출 : 열람 기간 내 열람 장소에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속초시 법무행정 사무처리 규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1월 30일

속 초 시 장

1. 자치법규명 :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2. 개정이유

민선7기 시정 현안사업과 시민중심 행정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 관계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정원관리기관별(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사업소, 동) 및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별표)

4. 자치법규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2. 5일까지 아래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속초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나. 의견제출 장소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826 강원도 속초시 중앙로 183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
- 연락처 : 전화(033-639-2139), 팩스(033-639-2590)

다.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속초시청 자치행정과 조직인사팀(☎033-639-21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초시 규칙 제 호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중 “별표와같다”를 “별표와 같다”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속초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 · 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 · 직렬별 정원은 <u>별표와 같다</u> .	제2조(직급 · 직렬별 정원) ----- ----- <u>별표와 같다</u> .